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5나2009323 부당이득금

원고, 항소인 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3. [redacted]

4. [redacted]

5. 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도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지방법원 2015. 1. 9. 선고 2014가합63622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10. 26.

판 결 선 고 2018. 11. 23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, 원고 파산자 [redacted]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66,706,104원, 원고 파산자 [redacted]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5,517,791원, 원고 파산자 [redacted]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7,213,408원, 원고 파산자 [redacted]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5,517,791원,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8,248,9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7쪽 제10행의 "마땅하므로"를 "마땅하고, 설립목적이 [redacted]프로퍼티파트너스에 대한 대출 등에 있고 자본금이 1,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[redacted]프로퍼티파트너스와 [redacted]저축은행 등 사이의 대출 과정에서 형식적 의미의 창구 역할을 하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"로 고친다.

○ 제8쪽 제3행의 "판결" 다음에 "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00613 판결"을 추가한다.

○ 제8쪽 제11행의 "점" 다음에 ", [redacted]저축은행 등이 스스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를 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소유권취득이 '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'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명백한 표시도 없는 점"을 추가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한창

판사 왕정옥

판사 박재영